

의안번호	2216245
의 퇴 인	진선미 의원
회 답 일	2026.02.23.
추계번호	26C049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 소요는 2027년 6억 1,800만원, 2031년 6억 6,8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32억 1,300만원(연평균 6억 4,300만원)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학생 주거실태조사 (안 제 11조의3)	618	630	642	655	668	3,213	643

주: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되는 것을 가정하고 산출한 결과로, 개정안 시행 시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 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1조의4 (학생 주거실태조사)	(제1항)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생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3항) 교육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의 업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업무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1조의3 (학생 주거실태조사)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서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

○ 개정안에 따른 실태조사 비용은 국가재정으로 부담한다고 가정하며, 최근 3회분 특수가구 주거실태조사 집행액을 준용하여 산출

- 현행 「주거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매년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특성가구(청년·신혼·고령가구)¹⁾에 대해서는 심층 결과분석을 수행하고 있음²⁾
- 한편 상술한 정기조사와 별도로 특수가구 대상 수시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 주택 이외의 거처('22), 장애인 가구('23), 지하주택('24)에 대한 조사가 수행됨
- 개정안은 대학생 주거지원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실태조사를 수행하려는 취지이므로 특수가구 주거실태조사 집행액을 준용하여 추계

○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거실태조사 주기를 고려하여, 학생 대상 주거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

- 개정안은 매년 갱신되는 고등교육기관 공시정보만으로는 대학생의 주거실태 및 정책 수요 파악에 한계가 있음을 제안이유로 명시하고 있음³⁾

□ 안 부칙에 따른 시행일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므로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으로 함

1)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청년가구”란 가구주 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가구, “신혼가구”란 혼인한 지 7년 이하인 가구, “고령가구”란 가구주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가구를 말함

2) 「주거기본법」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 "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⑤ (생략)

⑥ 주거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 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개정안 제안이유

... 그런데 「주거기본법」에 규정된 대학생의 주거실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 수용현황 공시로는 대학생의 주거실태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현행법에 따른 교육통계조사에도 대학생의 주거실태는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에 따라 특수가구 주거실태조사 집행액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총 32억 1,300만원(연평균 6억 4,300만원)으로 추계
 -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전망을 적용하여 산출

[표 2] 특수가구 주거실태조사 개요

구분	주택 이외의 거처	장애인 가구	지하주택
실시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	한국주택학회
조사 표본 수	10,000가구	8,000가구	6,000가구
조사방식	면접조사	면접조사	현장조사, 면접조사
집행액(백만원)	592	584	493

자료: 국토교통부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3]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 계	연평균
학생 주거실태조사	618	630	642	655	668	3,213	643

주: 실태조사가 매년 실시되는 것을 가정하고 산출한 결과로, 개정안 시행 시 운영 방식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